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I. 공통 표시방법

1. 표시의 일반사항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 등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시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아래의 표시방법을 권장한다.

- 1)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제품 사용을 위하여 품목, 제품명,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 등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 2) 표시사항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표시사항을 그림기호*로 표시

* 그림기호의 경우 이 고시 부록 1을 참고하여 표시할 수 있음

- 3) 제품 내 별도의 첨부문서가 동봉된 경우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십시오." 등의 안내문 표시
- 4) 어린이의 삼킴 및 중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살균·소독제품, 구제제품, 보존제품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캐릭터의 표시 자제
 마.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표시사항을 부록 1에 따른 그림기호로 나타낸 경우에는 해당 그림기호와 연계된 문구가 표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그림기호와 연계된 문구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 위치

가. 제품 겉면의 표시 방법

- 1)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 그 용기도 포함함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1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1>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

표시면의 면적	표시사항
50 cm ² ~100 cm ²	· 품목 · 제품명 · 제조자,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수입자,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 그림문자 · 주요물질

<표1>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

표시면의 면적	표시사항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 안전기준확인 마크
50 cm ² 미만	• 품목 • 제품명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나. 제품 겉면 이외의 표시 방법

- 1)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포장이란 제품 겉면을 보호하거나 둘러싸는 것으로서 운송·보관 등의 취급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인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판매 또는 유통 시 보여지는 포장을 말함

- 2) 1)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1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할 수 있다(최종 사용자에게 유통될 경우에 한함).

- 3) 다음 아래와 같이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제품의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

사항이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을 사용하여 표시면 이외에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가) 제품이 고형으로써 그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나)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훼손될 경우 제품의 상품성에 영향을 주는 수입 제품

다) 제품 사용 시 제품 겉면에 부착된 라벨의 연소 등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 초 등의 제품(전용 받침대가 있는 제품 포함)

라)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기기의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제조되는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의 제품

마) 제품 겉면에 제2조제8호에 따른 표시면이 없는 제품

3. 활자 크기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의 크기는 표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2>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활자의 크기

표시면의 면적	활자 크기
200 cm ² 이상	8 포인트 이상
200 cm ² 미만	6 포인트 이상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1. 품목

품목은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종류를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이하 "눈에 띄는 방법"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품목: **세정제**). 이 경우, 품목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에 기재된 품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제품명

제품명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으로써,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제품명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용도

용도는 별표 2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예, 용도: 자동차용(실내용)],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용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이 표백제인 경우에 다음 표1의 계열을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예, 용도(계열): 섬유용(과탄산나트륨계)].

<표1> 표백제의 계열

과탄산나트륨계, 과붕산나트륨계, 과산화수소계, 염소계, 기타 등

4. 제형

제형은 별표 2에 따른 〈표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 구분 중 분류란에 따른 제형을 표시(사용할 때의 제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형은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제형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품의 원제형이 사용할 때의 제형과 다른 경우에는 제품의 원제형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표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형 구분 중 분류란에 따른 제형이 아닌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제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제조연월

제조연월은 "○○년○○월", "○○○○년○○월", "○○.○○.(연.월.)", "○○○○.○○.(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의 표시위치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제조연월이 기재된 위치를 문구로 표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제조연월: 제품 상단 표시). 또한, 수입 제품에 기 표시된 제조연월의 형식이 국내와 달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2와 같이 읽는 법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예, 제조연월: AU9131 → 9(2019년)131(1월 31일)].

<표2> 수입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의 표시방법 예시

PROD19365 → 19(2019년)365(해당연도 365일째 일에 생산)
2019, 365 → 2019년 365일째 만들어짐(2019년 12월 31일)
19123130876 → 19(2019년)12(12월)31(31일)
19365123404028316 → 19(2019년)365(해당연도 365일째)
AU9131 → 9(2019년)131(1월 31일)
9E261 → 9(2019년)E(5월)26(26일)

6. 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유통기한은 제조연월을 기준으로 "까지" 또는 "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

가. 제품의 중량·용량·개수 표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카트리지형, 필터형 등은 인쇄 가능 매수 또는 제품 크기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의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제품의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와 동일(범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품 표시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범위 이내의 단일값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 내 성분 및 배합비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받은 사항을 토대로 판매되는 단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가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함)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변경된 사실을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변경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2) 중량·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예시) 중량 00g(중량 변경 제품, 00g→00g 또는 00% 감소), 중량 00g

(이전 중량 00g) 등

8. 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어는점은 물과의 혼합비율과 혼합비율에 따른 어는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 또는 그래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9. 액성(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액성은 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액성을 표3에 따라 "원액(액성)"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액성: 원액(알칼리성)]. 다만, 표준사용량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원액과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소이온농도(pH)를 각각 표시할 수 있다[예, 액성: 원액(알칼리성), 표준사용량(약알칼리성)]. 또한, 액성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액성을 표시하되, 수소이온농도의 범위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예, 액성: 원액(중성, 약알칼리성, pH 7.0~10.0)], 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유성"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표3>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액성의 표시 문구

수소이온 농도(pH)	액성
11.0을 초과하는 것	알칼리성
8.0 초과 ~ 11.0 이하	약알칼리성
6.0 이상 ~ 8.0 이하	중성
3.0 이상 ~ 6.0 미만	약산성
3.0 미만	산성

10. 표준사용량(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표준사용량은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의 효과적인 기능을 낼 수 있는 적정 사용량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 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효과·효능(승인 대상 제품에 한함)

승인 대상 제품의 효과·효능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효과·효능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제품을 제조한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제조자, 주소, 연락처: (주)서울, 서울특별시 000, 02-000-0000)

13. 판매자, 주소, 연락처(제조자개발생산방식의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ODM 제품을 주문·판매하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예, 판매자, 주소, 연락처: (주)서울, 서울특별시 000, 02-000-0000)

14.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수입 제품을 최종 제조한 국가와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예, 제조국명, 제조회사: 미국(U.S.A.), 아메리칸&코리안(American & Korean)]. 다만, 재생용 잉크·토너의 원료 유통업체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생용 잉크·토너의 재제조 및 재생업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원료 제조회사의 상호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제품을 수입한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수입자, 주소, 연락처: (주)코리아, 서울특별시 000, 02-000-0000).

1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인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이는 면(이하 "주표시면"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하며,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안내문의 표시는 그림1과 같이 분명히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선 굵기 0.5 mm 이상) 안에 흰 배경 위의 적색 글씨(고딕체류)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 도안의 모양은 바로 세워진 직사각형 형태여야 하며 활자크기는 6 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가로·세로 비율 및 테두리선 굵기를 조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포장

[그림 1]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도안

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 1) 별표 4에 따른 I.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기준 및 II. 어린이보호 포장 적용 물질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가정용 제품이 아님" 또는 특정 사용처(예,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카센터용", 순간접착제의 경우 "산업용")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한 경우에는 가목 및 19. 사용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제품에 사용된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¹⁾을 아래의 구분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주요물질, 보존제, 계면활성제의 구분에서 중복되는 경우에 그 물질을 대표하는 해당 구분에서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주요물질 (예, 주요물질: 파라핀왁스, 폴리다이메틸실록산)

제품에 사용된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용 잉크·토너의 경우 1)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해당하는 물질이 향료일 경우에는 기능을 부가하여 "향료(물질명)"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두 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향료(대표물질명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 주요물질: 향료(d-리모넨 등)].

1) 제품의 상당부분(최대 함량 등)을 구성하는 대표 물질. 다만, 해당하는 물질이 물(정제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의 명칭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함

2) 제품의 주요 기능을 발현시키는 대표 물질

나. 보존제 (예, 보존제: 에탄올)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물질로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아밀신남알)

표4와 같은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0.01% 미만 사용된 경우에도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의 표시사항 명칭은 "알레르기물질"로 축약할 수 있음

<표4>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목록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4.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5. 파네솔 (CAS No 4602-84-0)
16.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7. 리날로올 (CAS No 78-70-6)
18. 벤조산벤질 (CAS No 120-51-4)
19.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0.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1. 리모넨 (CAS No 138-86-3, 5989-27-5, 5989-54-8)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4.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CAS No 31906-04-4)
25. 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¹⁾
26.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¹⁾

주(1) 아트라놀(CAS No 526-37-4)과 클로로아트라놀(CAS No 57074-21-2)은 참나무이끼 추출물과 나무이끼추출물의 구성성분임

라. 계면활성제 [예, 계면활성제: 알킬벤젠술포산염(음이온계)]

제품에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모든 물질 및 표5에 따른 계열을 "물질명 (계열)"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5> 계면활성제의 계열

음이온계, 비이온계, 양쪽성 이온계, 양이온계, 기타 등

마. 형광증백제(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에 한함) [예, 형광증백제 2,2'-(1,2-에탄디디-4,1-페닐렌)비스벤조옥사조일]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물질 (예, 기타물질: 수산화나트륨, 이소프로필벤젠)

제품에 아래의 구분에 따른 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물질이 산도조절제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능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예, 기타물질: 황산(산도조절제)]. 다만, 해당 물질이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계면활성제의 구분 중 어느 하나의 구분에서 그 물질의 명칭이 이미 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그 함량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

합물의 분류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²⁾

-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²⁾
- 3)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 4)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 5) 문신용 염료에 사용된 모든 물질⁽³⁾. 다만,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은 생략 가능
 - 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을 수준의 소량 함유 물질
 - 나) 생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는 물질
 - 다) 안정화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물질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물질

주(1) 화학물질 명칭의 기재방법

- ①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을 기재한다. 다만,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물질명을 기재할 수 있다.
- ②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주(2)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의 물질 표시방법

- ① 안전기준 확인 신고 이후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의 유효기간 동안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확인의 유효기간 갱신 및 신고를 한 제품 중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확인의 유효기간 동안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주(3) 문신용 염료에 사용된 물질의 표시방법

- ① 문신용 염료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물질부터 표시한다. 다만, 1 % 이하로 사용된 물질은 그 함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표시할 수 있다.
- ②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물질의 명칭을 표시한다.
- ③ 수소이온농도(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그 물질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표시할 수 있다.

18. 신호어 및 그림문자

제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그 함량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에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따른 신호어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질이 산도조절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호어는 동 규정 제10조에 따른 표시를 말하며,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문자는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표시를 말하며,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면적이 1 cm² 이상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9. 사용방법(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필요시 닫는 방법 포함)’에 대한 문구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이 아니라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외면 덮개 등에 해당

방법에 대한 문구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은 특정 용법이 적용되는 등 소비자의 사전 숙지가 필요한 경우 표시할 수 있다.

20. 사용상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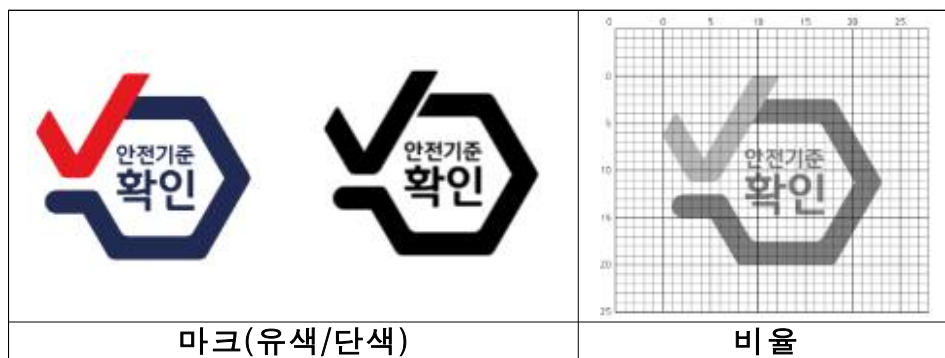
별표 5의 II.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에 따른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중 필수 표시사항은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권장 표시사항 등도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중복되는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거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상세정보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1. 응급처치

별표 5의 II.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에 따른 응급처치 문구 중 필수 표시사항은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권장 표시사항 등도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중복되는 응급처치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거나 응급처치를 위한 상세정보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2. 안전기준확인 마크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기준확인 마크를 그림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크의 색상은 유색 또는 단색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마크의 크기는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림2] 안전기준확인 마크 도안

23.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신고번호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승인번호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신고번호: 0000).

[부록 1]

그림기호 표시방법 예시

그림기호 표시방법 예시는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문구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참고자료이다. 다만, 표에 따른 그림기호 도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래의 그림과 같이 "©A.I.S.E."를 표시하여야 하며, 관련 웹주소(www.cleanright.eu)는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 그림기호는 별표 6에 따른 제품 겉면 또는 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브랜드나 상표 등의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3. 그림기호의 색상은 검정색 대신 다른 어두운 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X 표시의 경우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림기호의 크기는 1 cm²이상이어야 한다.
4. 그림기호는 표에서 정한 문구로만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하고 있지 않는 다른 어느 문구와 혼용하여 표시할 수 없다.



<그림> 그림기호 표시 예시

<표> 표시사항 문구별 그림기호 도안

그림기호	표시사항	관련 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응급처치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시오. · 눈에 들어갔을 때는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응급처치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 장갑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응급처치	· 섭취하지 마시오. 제품을 섭취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 후 잔량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¹⁾
	사용상 주의사항	· 다른 제품과 혼용하지 마시오.

그림기호	표시사항	관련 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 마른 손으로 취급하십시오. ⁽¹⁾
	사용상 주의사항	· 포장을 확실히 닫으십시오. ⁽¹⁾
	사용상 주의사항	· 자르거나 뚫거나 부러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¹⁾
	사용상 주의사항	· 붙어있는 캡슐을 뜯지 마십시오.

주(1) 그림기호와 관련 문구를 함께 표시함

[부록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도안 예시

1.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u>0000</u>	제품명:
품목:	제형:
용도:	유통기한:
제조연월:	중량·용량·매수:
어는점:	표준사용량:
액성:	
제조사, 주소, 연락처:	
판매자, 주소, 연락처:	
제조국명, 제조회사:	
수입자, 주소, 연락처:	
사용 물질	신호어
주요물질:	그림문지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	
기타물질:	
사용방법	
①	
사용상 주의사항	
①	
응급처치	
①	

* 주표시면이란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함

2. 표시면의 면적이 $50\text{ cm}^2 \sim 100\text{ cm}^2$ 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 어린이보호포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u>0000</u> 품목: 제품명: 주요물질: 제조자, 연락처: 수입자, 연락처: 그림문자
---	---

3. 표시면의 면적이 50 cm^2 미만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품목:

제품명:

신고번호: 0000